

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

1995. 10. 10

기획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5년 8월 8일

○ 회부일자 : 1995년 8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('95. 8. 22)상정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라. 재 상정일자 : 제 11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('95. 9. 21)상정
수정안 제출동위 및 수정안의 취지설명

마. 재 상정일자 : 제 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('95. 10. 10)상정

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 박 경 국)

가. 제안이유

-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도민의 뜻을 충북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설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
- 도정시책에 대한 공개와 이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열린도정, 민본위 도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구 성 : 각계 각층의 도민 100명 이내
- 기 능 : 생활현장의 체험적 도민의견을 수렴하고 충북의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방향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는 공식기구
- 회 의 : 정기회 년 2회,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
- 임 기 :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- 분과위원회 : 행정제도, 산업경제, 환경복지, 건설교통, 정보과학, 문화관광, 분과위원회등 6개 분야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김 재 평)

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
이는 삶의 현장에서 보고 느낀 도민의 뜻을 충북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설정에 반영해 나가는 한편 도정시책에 대한 공개와 이에 대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열린

도정, 민본위 도정을 실천하고자 민선 도지사의 공식적인 정책자문기구로서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

그 주요 내용으로는

첫째, 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

- 충북의 장기발전목표 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- 중단기 발전목표 및 도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- 기타 지역현안사항등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도 도정 전반에 대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했으며

둘째, 구성에 있어서는

-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며
-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고
- 위원의 자격으로는
 - 지역발전에 애착심이 강한 인사로서 참신한 시대감각의 소유자
 - 학계, 종교계, 경제계, 문화예술계, 공무원등 분야별 전문가
 - 농업, 제조업, 건설업, 상업등 산업별 현장 생활인
 - 주부, 출향인사, 복지법인 종사자등 사회저변층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생활인을 대상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토록 했으며

셋째, 위원의 임기에 있어

-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

넷째, 회의에 있어

-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토록 하고

다섯째,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

- 위원회에 행정제도분과위원회, 산업경제분과위원회, 환경복지분과위원회, 건설교통분과위원회, 정보과학분과위원회, 문화관광분과위원회등 6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음.

여섯째, 사무처리에 있어

-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법인단체등에 사무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
-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수탁기관에 5명 이내의 도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시키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등

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도민역량을 결집하고 민본도정의 구심체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나 위원수가 과도한 것 같고 순수 자문기구로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본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 :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는 충북의 장기발전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등에 관한 도정 자문기관인데 정기회의 연2회와 임시회의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가
- 답변 :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생활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선하고 또한 위원의 직업 및 희망을 고려하여 분과위원을 선임하기 때문에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 (기획관 박 경 국)
- 질의 : 위원의 인선기준에 있어 지역발전에 애착심이 강한 인사로서 참신한 시대감각의 소유자라고 하는 가치기준이 자칫 객관성을 잃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

- 답변 : 본 조례가 제정되고 본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합한 인사가 선정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할 것임. (기획관 박 경 국)
- 질의 :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및 생활인 60명을 인선하여 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는데 분야별 전문가의 경우 청주에 편중되게 인선될 우려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청주등 특정 분야를 위한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
- 답변 : 조례가 제정되고 내부지침을 마련할 시 지역안배 및 직업안배등을 통하여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음.
(기획관리실장 김 광 흥)

5. 토론요지 : 없 음.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1) 제출일자 : 1995년 9월 15일
- 2) 회부일자 : 1995년 9월 15일

다. 수정이유

○ 본 21세기 위원회는 충북의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 도정목표정립과 분야별 정책발향실정에 관한 전문가 및 현장 생활인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으나

- 위원수가 100명에 이르고 있어 운영적 측면에서 비효율성이 우려되고 있어 위원수를 축소하였으며, 순수 민간자문기구로서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도록 심의의결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음.

라. 수정 주요골자

- ㉔ 위원회 위원수를 100인에서 60명으로 축소 (안 제3조 제1항)
- ㉕ 심의의결에 대한 의결정족수 조항 삭제 (안 제6조 제3항)
- ㉖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을 자문사항으로 수정 (안 제7조 제4항)
- ㉗ 업무위탁기관에 공무원 파견 근거조항 삭제 (안 제8조 제2항)
- ㉘ 관계공무원, 이해당사자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 (안 제11조 제2항)
- ㉙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 (안 제13조)
- ㉚ 기능이 유사한 충청북도 세계화추진위원회조례 폐지 (안 부칙)

7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 (참석 : 8명, 찬성 : 8명)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.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- 충청북도 21세기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
- 도설치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안